

全南·北地域에서의 環境犯罪現況과 그 對策에 관한 研究*

徐 巨 錫**

〈目 次〉

- | | |
|--------------------------|-------------------|
| I. 序 論 | IV. 環境犯罪에 대한 對策 |
| II. 環境犯罪의 概念 | 1. 環境行政次元에서의 解決方案 |
| III. 全南·北地域의 環境犯罪 現況 | 2. 環境刑法을 통한 解決方案 |
| 1. 全南·北의 環境與件과
環境汚染實態 | 3. 民間次元에서의 解決方案 |
| 2. 全南·北의 環境犯罪 現況 | V. 結 論 |

I. 序 論

오늘날 지구는 인류가 절대적으로 신봉해왔던 과학기술주의와 자연을 무한정한 정복대상으로만 보는 자연관으로 인하여 병이 들대로 들어 도처에서 시시각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멀리는 1952년 대기중의 아황산가스 증독으로 4,000여명의 노약자를 희생시킨 런던의 살인스모그사건¹⁾을

* 이 논문은 1990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全北大學校 法科大學 副教授

1) 런던의 스모그사건뿐 아니라 세계각지에서 발생한 유명대기오염사건에 대해서는 盧在植, 大氣汚染의 原因과 對策, 環境犯罪의 現況과 對策, 法務研修院 1987, 68面; Wilkins, E.T.: Air Pollution in a London Smog, Mechanical Engineering, May 1954 p. 426.

비롯하여 가깝게는 1980년대의 우리나라 온산지역의 유해중금속오염으로 인한 집단괴질사건이라든가 1991년 특정기업이 저지른 낙동강 폐놀방류사건, 1993년에 조사된 전국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실태²⁾ 등이 이를 웅변으로 반증해주고 있다.

UN에서는 이러한 지구촌의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의 UN 環境會議 개최를 비롯하여 UN 環境機構(UNEP) 주도하의 비엔나협약 체결,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그리고 1992년을 UN 環境의 해로 정하였으며 1992년 6월초 브라질의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개최하여 전세계 17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지구헌장(Earth Charter), 지구환경보전강령(Agenda 21), 기후변화협약(The Climate Change Convention)과 생물다양성협약(The Biological Diversity Convention)을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생존과 건강 그리고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인 배양을 위해 1977년 12월 31일의 環境保全法 制定에 이어 1980년 1월 15일의 環境廳開廳, 1990년의 環境元年 宣布, 1990년 1월 環境廳의 環境處로의 승격, 環境關係基本法制定, 1991년 5월 31일의 環境犯罪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の 制定 그리고 환경부문에산증액³⁾과 같은 다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같이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가로 놓여있다.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이른바 남북문제에 있어서나 대도시민과 중소 도시민 그리고 농민간에 환경에 대한 인식의 갭이 엄청나게 클 뿐아니라 환경

2) 환경처가 전국 7백74개 지점의 하수도에 대해 1993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오염물질 함유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7%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1993. 7. 25. 2면 참조)

3) 환경부문정부예산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1983년에 3억7,800만원 이었던 것이 1990년에 25억2,400만원으로 약 7배 증가하였으나 정부예산증 차지하는 비율은 별반 증가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부문예산 자체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한국환경연감 제4호, 환경처, 1991, 679面).

비용을 부담하는데도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인근에 공해배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면서도 쓰레기나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에서의 環境犯罪에 대한 研究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야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역 차원의 環境犯罪現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차원의 環境問題는 各地域의 환경문제가 개선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일반적인 環境與件과 環境犯罪의 現況을 파악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전남·북지역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근대화·산업화과정에서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최근들어 이른바 공해산업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검토와 주민들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공장유치를 서둘러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환경범죄의 개념을 검토해 본 뒤에 전남·북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오염의 실태와 환경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II. 環境犯罪의 概念

環境犯罪(Umwelt Kriminalität)라는 용어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이래의 열띤 논의를 거쳐 1992년 6월 국회에 제출된 刑法改正法律案중 第27章에 環境犯罪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정도로 그 용어의 사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環境犯罪의 概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1963년 우리나라에서 제정되었던 舊 公害防止法上の 公害概念으로부터 시작해 보는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이 法 第2條 1號에 의하면 公害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 악취 및 가스 등으로 인한 大氣汚染,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水質汚染, 騒音, 振動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생활환경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公害를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과 같은 주로 산업으로 인한 公害에만 한정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너무 축소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日本의 公害對策基本法 第2條 1項은 公害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상당범위에 걸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및 악취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公害의 발생원인을 사업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기타 사람의 활동까지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 및 악취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우리의 舊公害防止法 보다는 진일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公害犯罪을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데 있어서 피해의 사후뒤틀리만을 염두에 둔 것같은 소극적인 의미만을 갖게 될뿐만 아니라 違反行爲의 實質的 不法性이나 反社會性을 부각시키지 못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의 環境政策基本法 第3條 3項에 나타나있는 環境汚染의 定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의하면 環境汚染을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한다. 이것도 日本의 公害對策基本法 第2條 1項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주로 檢察과 法院에서 環境關聯行政法規에 대한 違反行爲를 한 者들을 일컬어 일반적으로 環境事犯⁴⁾이라고 불러 왔으나 이 용어도 刑法各則에 環境에 관한 罪를 신설하기 위해 刑法改正法律案을 제출해 둔 현시점에서 볼 때 적절한 용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외에 環境犯罪을 사람의 건강에 危害를 주거나 環境을 저해하는 環境汚染行爲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서 法에 의하여 처벌되는

4) 대표적인 견해로서 환경사범이란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서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한다. 李 弘, 環境事犯團束上の問題點과 對策, 法務研修院, 檢察세미나研修資料(VI) 10面.

犯罪行爲라고 정의하는 견해⁵⁾도 있는데 이 견해가 環境事犯과 環境犯罪을 同一視하는 점은 동의할 수 없으나 환경범죄의 범주 속에 사람의 건강에 危害를 주는 行爲뿐만 아니라 環境을 害하는 環境汚染行爲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環境關聯法規에 違反하는 行爲의 實質的 不法性이나 反社會性을 제대로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環境保護의 必要性을 인식시키고 環境보호의 實效性을 担保하기 위해서는 公害犯罪라든가 環境事犯이라는 용어들보다는 環境犯罪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⁶⁾

요컨대 環境犯罪란 自然環境⁷⁾을 汚染시키거나 侵害하는 行爲 및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生命, 身體에 危險을 發生케 하는 行爲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⁸⁾

III. 全南·北地域의 環境犯罪現況

1. 全南·北의 環境與件과 環境汚染實態

1) 全南·北의 環境與件

環境汚染의 근원적인 사발점은 인간자신을 하나의 오염원이라고 파악할 때 절대인구의 증가와 쾌적한 삶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쾌적한 삶에 대한 추구는 여러가지 문명의 이기를 개발하도록 자극함과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선호하게 하였다. 그 결과 도시인구의 증가는 물론이고 급속한 都市化, 産業化가 촉진됨으로써

5) 李相敦, 環境事犯에 관한 考察, 中央大 法學研究所 法學研究論文集, 第15輯, 1990, 62面.

6) 申東雲, 環境犯罪의 現況과 對策, 韓國刑事政策研究院, 1990, 9面.

7) O. Triffterer에 의하면 自然環境이란 토양, 물, 공기와 같은 環境媒體(die Umweltmedien wie Boden, Wasser, Luft)와 各種環境因子(die Umweltfaktoren) 그리고 各種物質의 순환과 에너지 保全, 수많은 하급 生態系를 포함한 총체로서의 生態系(das Ökosystem in seiner Gesamtheit)를 포함한 개념이다. O. Triffterer, Die Rolle des Strafrecht beim Umweltschutz in der BRD, ZStW 91, 1979, S. 310.

8) 徐巨錫, 環境犯罪에 관한 研究, 忠南大 博士學位論文, 1990, 9面.

생활하수, 쓰레기, 공장폐수, 매연, 분진, 소음등이 전국토의 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人口는 公業화가 시작될 즈음인 1960년대의 첫해인 1961년을 기준으로 할 때 2,544만명이던 것이 1990년에 4,341만명으로 1.7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인구에 대해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1961년에 약700만명으로 27.5% 이던 것이 1990년에는 3,240만명으로서 74.6%를 나타내고 있다. 시급이상 도시수도 1961년도에 27개이던 것이 1990년에는 67개로 늘어났다.⁹⁾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하게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전남·북지역의 경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남·북의 환경오염요인들의 변화추세는 <표 I-1>과 같다.

<표 I-1> 전남·북 환경오염요인의 변화추세

	연도	인구	도시수	도시인구수	자동차보유대수	환경오염업체수	쓰레기배출량	산업폐기물량
전남	1960	(천명) 3,553	4	(천명) 579				
	1970	4,005	4	885				
(광주 포함)	1980	3,779	4	1,269	23,365	662		
	1990	3,527	6	1,927	179,250	2,732	(%) 1,621,996	(ton/일) 153 ⁵²
전북	1960	2,395	3	244	540			
	1970	2,434	3	462	3,234			
	1980	2,287	3	677	16,544	551		
	1990	2,069	6	1,143	104,625	2,863	(kg/일) 2,342	1,335 ¹⁵

(전북통계연보, 전라북도, 1960,1970,1981,1990,1992 ;
 전남통계연보, 전라남도, 1992,75,233,309,311면 ;
 광주통계연보, 광주직할시, 1992,204면 ;
 한국통계연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2,1면, 1979, 342면, 1980, 273면,1991,372면 ;
 한국도시연감, 내무부, 1980,454,574~586면 ;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2,84면 ;
 에너지통계연보, 동력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1992,132~134면 참조)

9)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1991, 19면, 1992, 35면, 36면.

이 표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전남·북도의 전체인구가 1960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반하여 도시수는 전남이 2개 전북이 3개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보유대수와 환경오염 업체수는 비교적 큰 비율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전남·북의 공업단지현황은 <표 I-2>와 같다.

<표 I-2> 전남·북의 공업단지현황

	개수	입주업체수	종업원수 (천 명)	'90생산액 (억 원)	'90수출액 (백만불)
전 국	78	10,211	1,016.4	640,326	34,443.9
광 주	4	579	22.7	9,780.5	491
광주/전국(%)	5.1	5.7	2.2	1.5	1.4
전 북	7	386	30.2	13,601.4	553.2
전북/전국(%)	9.0	3.8	3.0	2.1	1.6
전 남	6	232	21.2	59,544.2	1,683.1
전남/전국(%)	7.7	2.3	2.1	9.3	4.9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115-118면)

이 표에 의하면 공단의 개수는 광주와 전남이 합하여 10개이고 전북이 7개로 각각 전국대비 11.1%와 9%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1990년 생산액과 수출액을 보면 광주·전남이 전국대비 10.8%와 6.3%를 기록하고 있고 전북이 전국대비 2.1%와 1.6%를 나타내고 있어 공단의 수효면에서는 그런대로 구색을 갖추고 있으나 생산액과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미미해서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공업 단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북에 있는 공단의 경우 전국대비 생산액이 2.1%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 지역의 제조업생산 규모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2) 全南·北의 環境汚染實態

① 水質汚染

水質汚染은 대부분 生活下水, 産業廢水, 鑛山廢水, 畜産廢水 등에 의해 유발된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生活下水인데 이것은 人口가 밀집된 대도시 주변 수역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충이 시급하다. 산업폐수는 각종 산업활동의 결과로 발생되며 생활하수와는 달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하천의 생태계는 물론이러니와 人體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환경처는 수질오염 영향권별로 산업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 6개지방 환경청과 7개 환경출장소를 설치하여 폐수다량배출업소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예산,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닌것으로 생각된다.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은 광주지방환경청 관할로 되어 있으며 광주지방환경청은 그 외에도 제주도과 경남 하동군, 남해군까지 관할하고 있다.

지역별 공단폐수배출시설을 보면 <표 I-3>과 같다.

<표 I-3> 지역별 공단폐수배출 시설현황

	업 체 수 / (%)	폐수배출량(m ³ 일) / (%)
전 국	2,968 / (100%)	5,375,866 / (100%)
광 주	96 / (3.24)	20,307 / (0.38)
전 북	139 / (4.67)	101,628 / (1.89)
전 남	107 / (3.6)	1,416,924 / (2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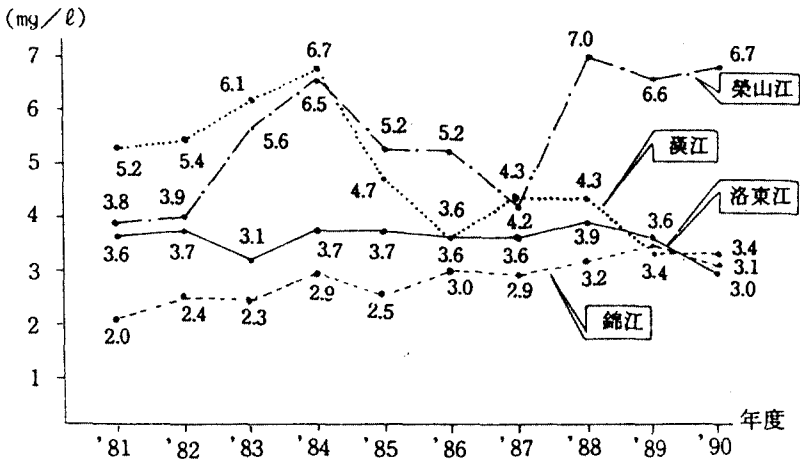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584면)

이 표를 보면 업체수는 전남북이 342개로서 전국 2968개중 1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1일 폐수배출량은 전남북이 1,538,859m³로서 전국 5,375,866m³중 28.62%를 차지하고 있어 공단수에 비해 배출되는 폐수의 절대량이 타지역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정기적으로 水質을 조사하고 있는 25개 水系중에서 4大江의 주요지점의 10년간의 水質汚染度(BOD)의 변화추세는 <그림 I-4>와 같다.

<그림 I-4> 4大江의 연도별 오염도(BOD)현황



(환경백서, 환경처, 1990, 159면)

이 그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4大江 중에서는 영산강의 오염도(BOD)가 가장 심한데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3개의 강도 수질이 양호한 편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영산강보다는 낮고 모두 수질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남·북지역에서 발원하거나 이 지역을 관류하는 江에는 크게 영산강, 금강,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이 있다.

가) 영산강수계

영산강은 전남 담양읍에서 발원하여 영산강 하구언까지 간선유료연장 136km를 흘러 3371.30km²의 유역면적을 가지고 있는 광주·전남의 젖줄로서 <그림 I-5>에서 나타남바와 같이 4大江中 지난 10년간 水質汚染度(BOD)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87년 한때 수질이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 이유는 BOD에 의한 수질오염도가 오염물질유입량과 하천의 유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영산강의 경우에 부족한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 장성호, 나주호, 광주호등의 인공호소를 축조함으로써 유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 데 반하여 광주시의 생활하수와 공단폐수는 더욱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표 I-5>에 의하면 광주천의 경우 환경처 수질환경기준(BOD기준)¹⁰⁾에 의하면 약품처리후

<표 I-5> 영산강 수계의 수질오염도 (BOD)현황

(mg/ℓ)

구분 년도	광 주 2	광 주 천 2	광주공단1	나 주
1984	27.3	56.8	·	6.5
1985	18.2	41.8	·	5.2
1986	19.9	28.5	·	5.2
1987	20.1	31.7	·	4.2
1988	26.7	35.8	·	7.0
1989	22.8	33.3	·	6.6
1990	15.7	25.0	121.4	6.7
평 균	21.5	36.1	121.4	5.9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333-349면)

10) 수질환경기준은 다음과 같다(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572面 참조).

등 급	I	II	III	IV	V
이용 목적 별	상수원수	상수원수 2급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2급	공업용수
적 용 대 상	1급	수산용수 1급	공업용수 1급	농업용수	3급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BoD)(mg/ℓ)	1이하	3이하	6이하	8이하	10이하

- ①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 정수처리후 사용
- ②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 ③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 ④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 ⑤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 ⑥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특수정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조차 사용할 수 없는 물이 흐르고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나주의 경우에도 고도의 정수처리를 한 후에야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임이 드러났다.

나) 금강수계

금강은 전북 진안군 상전면과 무주군 설천면에서 발원하여 대청호, 대전, 부여를 거쳐 장항과 군산 앞바다에 이르는 간선유로연장 395.9km, 유역면적을 9810.40 km²로 하고 있는 강이다. 얼마전부터 전주를 비롯한 군산, 이리 등의 60~70만명 정도가 상수원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강 본류인 부여 백마강 취수탑에서 물을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의 물은 전북 진안에 용담댐이 완공되어 전북지역의 상수원 사정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충청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생활하수와 농약, 축산폐수, 산업폐수등이 수질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전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경우를 보면 겨우 1/3정도만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칠 뿐 나머지는 갑천을 거쳐 그대로 금강에 유입되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에는

<표 I - 6> 금강수계의 오염도(BOD)현황

(mg/l)

년도 \ 구분	갑 천 3	무 심 천 2	부 여 2
1984	15.2	56.7	4.4
1985	18.4	51.1	2.8
1986	23.8	45.5	3.1
1987	17.2	26.5	2.8
1988	31.9	34.6	3.2
1989	28.2	29.1	3.5
1990	15.5	19.2	3.1
평 균	21.45	37.5	3.3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303면)

무심천을 거쳐서, 그리고 그 이외의 시·군지역도 거의가 아무런 하수종말처리가 되지 않은 채 금강에 흘러들고 있는 실정이다. <표 I-6>은 금강수계의 오염도(BOD)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각각 대전과 청주의 하수가 유입되는 갑천과 무심천은 환경처기준에 의거(BOD기준) 특수정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며 금강광역상수도 취수탑을 끼고 있는 부여의 경우에는 최근 평균이 상수원수 3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도의 정수처리를 한 후에야 비로소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다) 만경강수계

만경강은 전북 완주군 고산천에서 발원하여 전북 김제군 진봉면 앞바다에 이르는 간선유로연장 74.1km, 유역면적 1570.9km²인 강으로서 소양천과 전주천 그리고 삼천을 지천으로 두고 있다. 이강의 수질은 전북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과 공단을 끼고 있어 생활하수 공단폐수, 농업폐수에 의해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전주의 1·2공단, 이리공단, 익산지역의 축산농가, 석재공장

<표 I-7> 만경강 수계의 수질오염도(BOD)현황

(mg/ℓ)

년도 \ 구분	전주천2	전주공단	삼 레	목천포천	이리공단
1984	22.0	135.9	12.4	·	194.8
1985	22.5	75.4	13.3	·	131.7
1986	17.4	70.4	5.2	·	130.2
1987	18.9	79.0	4.1	·	113.2
1988	46.2	72.1	8.7	·	115.8
1989	28.7	70.7	7.4	·	28.5
1990	20.9	77.9	6.8	103.0	38.4
평 균	25.2	83.1	8.3	103.0	107.5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363-372면)

등에서 나온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과 농약이 함유된 폐수로 인하여 만경강은 거의 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

〈표 I-7〉은 만경강 수계의 수질오염도(BOD)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환경처기준에 의거할 때 삼례의 경우에만 특수정수처리를 한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 죽은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동진강수계

동진강은 전북 정읍군 산외면에서 발원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서해바다에 이르는 간선유로연장 40.9km에 100.40km²를 유역면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강은 비교적 수량이 적고 유역면적도 그다지 넓은 편은 아니나 정주, 김제시를 포함하여 전북 정읍군, 김제군 부안군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해주고 있다. 동진강도 정주, 김제, 부안등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농공단지의 공장폐수, 축산폐수, 농약오염 등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표 I-8〉은 동진강 수계의 수질오염도(BOD)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I-8〉 동진강 수계의 수질오염도(BOD)현황

(mg/ℓ)

구분 \ 년도	정 읍 천	원 평 천	고 부 천
1984	3.7	3.1	2.7
1985	2.5	3.1	3.2
1986	2.8	2.6	2.6
1987	3.2	3.1	2.9
1988	5.7	4.4	4.1
1989	6.2	4.0	4.0
1990	4.9	4.4	3.8
평 균	4.14	3.52	3.33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390-391면)

환경처 기준에 의하면 위의 표에서 동진강에 속하는 3개천 모두 상수원수 3급에 해당하므로 고도의 정수처리를 한 경우가 아니면 공업용수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BOD만을 가지고 인체의 건강에 유해한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설사 BOD가 적정하더라도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등이 검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동진강의 3개지천 중에서 정읍천의 오염이 가장 심한 것은 동진강유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정읍천을 끼고 있는 정주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주시의 생활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 섬진강수계

섬진강은 전북 임실군 신평면에서 발원하여 경남하동포구까지 간선유로연장 212.3km, 유역면적 4896.5km²의 강으로서 총유역면적 중 전북이 47%를 그리고 나머지 53%를 전남과 경남일부가 차지하고 있다. 섬진강 상류에 속하는 전북 임실군 강진면 옥정호는 저수량이 4억4천6백만톤으로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호수가 안고있는 문제점이긴 하지만 가두리양식에 의한 수질

〈표 I - 9〉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BOD)현황

(mg/ℓ)

년도	구분		
	남 원	곡 성	하 동
1984	1.2	1.3	1.5
1985	1.2	1.1	1.3
1986	1.2	1.1	1.1
1987	1.4	1.3	1.4
1988	1.5	1.4	2.0
1989	1.1	1.3	1.2
1990	1.0	1.1	1.1
평 균	1.2	1.2	1.4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359, 361면)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가뭄이 극심한 경우에는 양식고기들의 배설물 사료, 항생제등으로 인하여 부영양화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표 I-9〉는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섬진강의 수질오염은 다른 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 이유는 섬진강유역 주변에 도시가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도 규모가 크지않고 고산지대를 흐르는 관계로 농경지가 적어 생활하수와 농업폐수의 유입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섬진강은 하류인 하동에 가서 조금 오염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전지역이 상수원수 2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전여과 등에 의한 정수처리 방법에 의하여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 섬진강 유역에서 가장 큰 도시는 남원이므로 앞으로 남원시의 생활하수를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의해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섬진강의 수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② 大氣汚染

수질오염은 오염상태를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대기오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가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잘 알 수 없다. 대기오염도 수질오염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산업화가 주원인이 된다. 즉 대기오염에는 도시화에 따른 가정난방과 취사에 의한 오염물질배출, 자동차, 기차등의 교통수단이용에 따른 배기가스배출, 그리고 주로 산업체에서 생산활동 중에 배출하는 오염물질 등이 주요오염원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원료 총사용량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석유류, 도시가스의 공급으로 인하여 점차 그 비중이 약해지고 있으나 절대량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연료가 되고 있다. 〈표 I-10〉은 전국의 연도별 석탄류 소비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표 I-10〉 연도별 석탄류 소비동향(전국)

(단위 : 1,000M/T)

년도	1971	1976	1981	1986	1988	1989	1990
계	11,725	18,368	28,847	42,218	44,915	43,266	43,405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134면)

위의 표에 의하면 석탄류 소비량이 1986년까지는 급속한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1986년 이후부터는 거의 고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11>은 1990년도 전남·북 석탄류 소비현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서울은 다른 연료의 소비도 엄청나지만 석탄류의 경우도 역시 수위를 달리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에는 석탄 소비가 서울을 앞지르고 있어 그만큼 매연등 대기오염의 소지를 크게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앞으로 청정연료로 대체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표 I-11> 1990년 전남·북 석탄류 소비현황

(단위 : 1,000M/T)

	전 국	서 울	광 주	전 북	전 남
계	43,405	6,365	808	1,094	6,562
비 율 (%)	100	14.66	1.86	2.52	15.11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134면)

<표 I-12>는 1990년 전남·북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I-12> 1990년 전남·북 도시가스 공급현황

(단위 : 1,000m³)

	전 국	서 울	광 주	전 북	전 남
계	963,345	491,957	27,286	14,510	11,727
비 율 (%)	100	51.11	2.83	1.50	1.21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135면)

이 표에 의하면 서울의 비율이 전체의 반을 넘어서고 있어 생산활동과 가정 난방에 있어서의 청정연료사용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전남·북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미미하기 이를 데 없는데 전남이 사실상 광주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특히 전북은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의 생산활동이 그만큼 적다는 것과

난방용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비율이 적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물질중 중요한 것을 들면 아황산가스(SO₂),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₂) 등이다. <표 I-13>은 1990년 전남·북지역의 중요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I-13> 1990년 전남·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톤)

오염물질 지역	아황산가스 (SO ₂)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 (NO ₂)	부유분진 (TSP)
전국	1,610,960	1,991,065	220,711	926,065	420,318
서울	138,035	639,600	52,106	128,423	48,947
광주	15,628	63,506	4,597	13,692	6,073
전북	68,821	78,147	6,400	26,524	16,216
전남	194,473	77,693	19,105	87,759	48,284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558-562면)

<표 I-14>는 주요도시의 연도별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I-14> 주요도시의 연도별 아황산가스 오염도

(단위 : ppm)

연도 도시명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서울	0.094	0.057	0.066	0.054	0.062	0.051
부산	0.058	0.065	0.050	0.042	0.044	0.039
울산	0.053	0.039	0.024	0.020	0.028	0.031
광주	0.009	0.024	0.026	0.032	0.019	0.017

(환경백서, 환경처, 1990, 99면)

이 표에 의하여 1980년 이후 주요도시의 SO₂ 오염도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지역은 저유황유의 공급으로 인하여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산성비의 문제이다.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염소이온 등은 빗물에 녹게 되면 강산성이 되는데 보통 PH5.6 이하의 산도를 갖는 비를 산성비라고 한다.

이것은 하천과 호수를 산성화시켜 플랑크톤을 감소케 함으로써 해양과 해저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론 농작물의 생육에도 지장을 주고 건물 등 구조물 등을 쉽게 부식시킨다. <표 I-14>에 의해 광주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보면 1980년에 0.009ppm이던 것이 1986년까지 0.020ppm으로 낮아졌다가 1990년에는 0.017ppm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주, 이리, 군산의 아황산가스농도는 1987년과 1990년 사이에 0.014~0.018ppm으로 환경기준치 0.05ppm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런 정도로는 산성비가 올 가능성이 희박하나 측정 시점과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최근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전혀없는 중국이 산동반도와 상해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출된 아황산가스 등의 대기오염물질¹²⁾과 고비사막, 타클라마칸 사막등지에서 일어난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매년 대량으로 날아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서해안 인근지역은 가히 環境의 死角地帶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기오염과 산성강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북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③ 騒音, 振動公害

騒音公害는 먼저 선반, 프레스, 송풍기, 금속가공기계, 방직기계 등과 같이 공장 및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나 기구에 의한 경우와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 교통기관에 의한 경우, 각종 생활소음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振動公害의 원인도 대체적으로 소음공해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공장 및 사업장에

11) 林齊彬, 大氣汚染 심한 都市工團, 月刊全羅, 1990년 6월호, 89면.

12) 극동지역(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SO₂)의 75%를 중국에서 배출하고 있고 중국이 배출하는 이산화황의 50%를 산동반도와 상해를 중심으로 배출하고 있다. 環境保全, 제14권 제24호, 1992. 3. 11면.

설치된 기계, 기구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차와 열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표 I-15>는 1990년 6월의 주요도시별 낮시간의 소음도를 측정된 것이다.

<표 I-15> 주요도시별 낮시간의 소음도(1990년 6월)

(단위 : dB(A))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환경기준	환경소음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일반지역	가. 지역	50	61	54	57	53
	나. 지역	55	63	57	61	56
	다. 지역	65	67	62	64	59
	라. 지역	70	-	62	63	64
도로변지역	가및나지역	65	76	70	70	68
	다. 지역	70	78	70	73	71
	라. 지역	75	-	70	73	73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522면)

위 표와 같이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소음, 진동공해의 현황은 조사된 통계가 나와 있으나 중·소도시를 포함한 지역별 통계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전북권의 중·소도시들 그리고 전남권의 도시들에 있어서 소음·진동의 피해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이 표에 의하면 광주의 소음도는 서울보다는 다소 떨어지나 부산, 대구와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海洋汚染

우리나라 海洋汚染의 主汚染源은 주요 江을 통하여 내륙의 도시와 공장으로 부터 배출되는 생활하수, 산업폐수등의 汚染物質과 연안도시로 부터 직접 바다에 배출되는 汚染物質인데 이것이 전체 오염부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외에 중요한 것으로는 해양사고로 인해 기름이 유출됨으로써 오염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표 I-16>은 1990년도 우리나라 주요연안 수질오염(COD)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I-16> 주요연안 수질오염(COD)현황(1990)

(단위 : mg/l)

해역	군산	목포	여수	인천	마산	부산	울산
평균수질	2.5	2.4	2.1	1.9	4.1	1.6	2.1

(환경백서, 환경처, 1990, 230면)

이 표에 의하면 마산·군산·목포 해역의 오염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I-17>은 연도별 해양오염사고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해역명	구분	'84		'86		'88		'90	
		발생건수	총배출량 (kl)	발생건수	총배출량 (kl)	발생건수	총배출량 (kl)	발생건수	(kl)
군산		13	5.1	5	0.3	4	3	6	0.8
목포		16	7.5	10	4	13	7	14	24
여수		15	41.6	9	647	11	0.9	20	1.3
인천		35	15.3	31	6	36	14	56	1,880
부산		44	45.7	54	1,778	42	21	41	35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607면)

이 표에 의하면 군산, 목포, 여수의 순으로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항구의 물동량에 따라 드나드는 배의 숫자가 달라지게 되고 입·출항이 잦을수록 그 연안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날 위험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볼때 이지역의 화물물동량이 타지역보다 적은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황해연안에서 중국이

배출하는 오수총량 154억톤의 80%가 공장폐수인데 이중 10%만 정화처리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류되고 있어 황해의 해양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¹³⁾

2. 全南·北의 環境犯罪現況

1) 環境行政機關의 指導團束內容

현행 법체계하에서 環境保全·管理·指導·團束은 행정기관의 몫이다. 관련 행정기관을 보면 하나는 1990년 1월에 승격한 環境處와 그 산하의 地方環境廳이고 다른 하나는 내무부산하의 各道·市·郡이다. 환경을 행정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이와같이 2원화되어 있어 각각 자신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작성된 환경관련행정기관의 지도단속내용에 관한 통계는 모두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는 접하기가 어렵다. 각 지방환경청이나 도·시·군의 관련부서의 협조가 없이는 이에 관심있는 연구자가 연도별, 지역별 통계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는다해도 그때 그때 중앙부처에 보고해버릴 뿐 독자적으로 연도별, 지역별 통계를 작성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구하기가 불가능하다.

다음의 <표 II-1>과 <표 II-2>는 1992년에 광주지방환경청과 광주직할시, 전라남도·전라북도가 국회에 제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실적을 지역별, 연도별, 환경오염 종류별로 구분하여 종합한 것이다. 이 통계들에 있어서 지도, 점검의 근거는 大氣·水質의 경우 1991년 2월 1일까지는 舊 環境保全法이고 그 이후에는 大氣는 大氣環境保全法, 水質은 水質環境保全法이다. 또한 廢棄物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廢棄物管理法이 그 단속의 근거가 되었다. <표 II-1>은 시·도관할 전남·북의 대기·수질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이들 전지역이 해를 거듭하면서 지도·

13) 조선일보, 1993. 8. 4. 19面.

〈표 II-1〉 전남·북 대기·수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현황(지도관할)

지역별	연도	분야별	단속인원	단속업소수	위반업소수	부과율(%)	위반사항		경고	행개명	조업정지	사용금지	기타	고발(명파)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가동						
광	1989	대기	474	499	51	10.2	38	13	12	39				
		수질	563	147	32.4	62	11	41	33	32	62	26	13	14
		대기	800	633	116	18.3	53	3	60	44	53	4		14
1990	1991	대기	1,059	701	232	33.0	81	10	76	65	61	54	15	24
		수질	1,188	1,254	44	3.5	16	2	26	20	15	1		8
		대기	1,715	1,984	231	11.64	89	14	60	68	37	88	37	30
1992	6	대기	527	571	55	9.6	32	1	6	16	10	32		8
		수질	608	820	99	12.1	53	8	11	27	6	46	15	5
		대기	6,934	6,915	975	14.0	424	44	199	308	222	413	137	67
전	1989	대기	745	1,165	81	7.3	22	7	15	37	28	12	1	7
		수질	437	560	91	16.3	20	15	10	46	28	29	18	5
		대기	1,804	1,960	121	7.0	41	6	6	68	44	49	9	2
1990	1991	수질	2,816	2,856	336	11.8	86	29	62	159	97	109	40	17
		대기	2,459	2,234	202	9.0	35	12	40	109	85	48	15	27
		수질	3,680	3,735	368	9.9	65	18	162	123	90	71	16	96
1992	6	대기	1,574	1,506	149	10.0	13	18	9	109	117	16		3
		수질	1,718	1,544	180	11.7	56	5	29	90	56	60	6	35
		대기	15,233	15,580	1,528	9.8	338	110	339	741	565	410	116	181
전	1989	대기	369	461	85	18.4	4	2	14	65	59	7	4	6
		수질	458	562	68	12.1	12	2	27	27	28	9	7	12
		대기	1,792	2,844	155	5.5	20	8	26	101	56	35	13	11
1990	1991	수질	2,703	3,817	370	9.7	172	19	30	149	90	210	24	15
		대기	2,370	2,712	132	4.9	34	18	80	80	64	34	7	3
		수질	3,396	4,167	225	5.4	113	27	38	47	45	116	14	10
1992	6	대기	1,515	1,532	97	6.3	17	1	3	76	57	18	1	3
		수질	1,570	1,799	116	6.4	58	1	3	54	42	61	1	1
		대기	14,173	17,894	1,248	7.0	430	60	159	599	441	490	71	61
남	1989	대기	369	461	85	18.4	4	2	14	65	59	7	4	6
		수질	458	562	68	12.1	12	2	27	27	28	9	7	12
		대기	1,792	2,844	155	5.5	20	8	26	101	56	35	13	11
1990	1991	수질	2,703	3,817	370	9.7	172	19	30	149	90	210	24	15
		대기	2,370	2,712	132	4.9	34	18	80	80	64	34	7	3
		수질	3,396	4,167	225	5.4	113	27	38	47	45	116	14	10
1992	6	대기	1,515	1,532	97	6.3	17	1	3	76	57	18	1	3
		수질	1,570	1,799	116	6.4	58	1	3	54	42	61	1	1
		대기	14,173	17,894	1,248	7.0	430	60	159	599	441	490	71	61
전	1989	대기	369	461	85	18.4	4	2	14	65	59	7	4	6
		수질	458	562	68	12.1	12	2	27	27	28	9	7	12
		대기	1,792	2,844	155	5.5	20	8	26	101	56	35	13	11
1990	1991	수질	2,703	3,817	370	9.7	172	19	30	149	90	210	24	15
		대기	2,370	2,712	132	4.9	34	18	80	80	64	34	7	3
		수질	3,396	4,167	225	5.4	113	27	38	47	45	116	14	10
1992	6	대기	1,515	1,532	97	6.3	17	1	3	76	57	18	1	3
		수질	1,570	1,799	116	6.4	58	1	3	54	42	61	1	1
		대기	14,173	17,894	1,248	7.0	430	60	159	599	441	490	71	61
전	1989	대기	369	461	85	18.4	4	2	14	65	59	7	4	6
		수질	458	562	68	12.1	12	2	27	27	28	9	7	12
		대기	1,792	2,844	155	5.5	20	8	26	101	56	35	13	11
1990	1991	수질	2,703	3,817	370	9.7	172	19	30	149	90	210	24	15
		대기	2,370	2,712	132	4.9	34	18	80	80	64	34	7	3
		수질	3,396	4,167	225	5.4	113	27	38	47	45	116	14	10
1992	6	대기	1,515	1,532	97	6.3	17	1	3	76	57	18	1	3
		수질	1,570	1,799	116	6.4	58	1	3	54	42	61	1	1
		대기	14,173	17,894	1,248	7.0	430	60	159	599	441	490	71	61
전	1989	대기	369	461	85	18.4	4	2	14	65	59	7	4	6
		수질	458	562	68	12.1	12	2	27	27	28	9	7	12
		대기	1,792	2,844	155	5.5	20	8	26	101	56	35	13	11
1990	1991	수질	2,703	3,817	370	9.7	172	19	30	149	90	210	24	15
		대기	2,370	2,712	132	4.9	34	18	80	80	64	34	7	3
		수질	3,396	4,167	225	5.4	113	27	38	47	45	116	14	10
1992	6	대기	1,515	1,532	97	6.3	17	1	3	76	57	18	1	3
		수질	1,570	1,799	116	6.4	58	1	3	54	42	61	1	1
		대기	14,173	17,894	1,248	7.0	430	60	159	599	441	490	71	61
전	1989	대기	369	461	85	18.4	4	2	14	65	59	7	4	6
		수질	458	562	68	12.1	12	2	27	27	28	9	7	12
		대기	1,792	2,844	155	5.5	20	8	26	101	56	35	13	11
1990	1991	수질	2,703	3,817	370	9.7	172	19	30	149	90	210	24	15
		대기	2,370	2,712	132	4.9	34	18	80	80	64	34	7	3
		수질	3,396	4,167	225	5.4	113	27	38	47	45	116	14	10
1992	6	대기	1,515	1,532	97	6.3	17	1	3	76	57	18	1	3
		수질	1,570	1,799	116	6.4	58	1	3	54	42	61	1	1
		대기	14,173	17,894	1,248	7.0	430	60	159	599	441	490	71	61
전	1989	대기	369	461	85	18.4	4	2	14	65	59	7	4	6
		수질	458	562	68	12.1	12	2	27	27	28	9	7	12
		대기	1,792	2,844	155	5.5	20	8	26	101	56	35	13	11
1990	1991	수질	2,703	3,817	370	9.7	172	19	30	149	90	210	24	15
		대기	2,370	2,712	132	4.9	34	18	80	80	64	34	7	3
		수질	3,396	4,167	225	5.4	113	27	38	47	45	116	14	10
1992	6	대기	1,515	1,532	97	6.3	17	1	3	76	57	18	1	3
		수질	1,570	1,799	116	6.4	58	1	3	54	42	61	1	1
		대기	14,173	17,894	1,248	7.0	430	60	159	599	441	490	71	61
전	1989	대기	369	461	85	18.4	4	2	14	65	59	7	4	6
		수질	458	562	68	12.1	12	2	27	27	28	9	7	12
		대기	1,792	2,844	155	5.5	20	8	26	101	56	35	13	11
1990	1991	수질	2,703	3,817	370	9.7	172	19	30	149	90	210	24	15
		대기	2,370	2,712	132	4.9	34	18	80	80	64	34	7	3
		수질	3,396	4,167	225	5.4	113	27	38	47	45	116	14	10
1992	6	대기	1,515	1,532	97	6.3	17	1	3	76	57	18	1	3
		수질	1,570	1,799	116	6.4	58	1	3	54	42	61	1	1
		대기	14,173	17,894	1,248	7.0	430	60	159	599	441	490	71	61
전	1989	대기	369	461	85	18.4	4	2	14	65	59	7	4	6
		수질	458	562	68	12.1	12	2	27	27	28	9	7	12
		대기	1,792	2,844	155	5.5	20	8	26	101	56	35	13	11
1990	1991	수질	2,703	3,817	370	9.7	172	19	30	149	90	210	24	15
		대기	2,370	2,712	132	4.9	34	18	80	80	64	34	7	3
		수질	3,396	4,167	225	5.4	113	27	38	47	45	116	14	

〈표 II-2〉 전남·북 대기·수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현황(광주지방환경청관할)

연도	지역별	분야	단속				위반사항				행정조치					
			인원	업소수	업소수	(%)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기타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기타	고발(병과)
1990	광주청 (광주,전남)	대기	287	552	52	9.4	26		24	28	6	35	26		11	(35)
		수질	300	1,339	431	32.2	58	14	17	20	13	49	43		4	(40)
	전주출장소	대기	721	996	19	1.9	6		7	6	6	6	7			(13)
		수질	856	1,071	37	3.5	30	1	3	3	2	26	8			1(5)
계			2,164	4,058	243	6.0										
1991	광주청 (광주,전남)	대기	457	942	133	14.1	16	6	52	59	41	27	56	1	6	2(97)
		수질	989	1,191	119	10.0	52	18	30		8	77	53	2	9	2(71)
	전주출장소	대기	568	473	44	9.3	10	1	12	21	14	14	14		2	(14)
		수질	448	954	51	5.3	36	1	9	5	5	5	12			(12)
계			2,462	3,560	347	9.7										
1992	광주청 (광주,전남)	대기	235	393	27	6.9	5		2	20	10	10	3		4	(7)
		수질	191	389	57	14.7	12		4	41	41	12	4			(5)
	전주출장소	대기	178	216	11	5.1	4	1	1	5	2	4	2		3	(4)
		수질	261	329	17	5.2	14		1	2	2	14	1			(2)
계			865	1,326	112	8.4	35	1	8	68	55	40	10	7	(18)	

(광주지방환경청이 1992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시·도의 환경관련업무가 점차 본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1년도의 부적률(단속업소수에 대한 위반업소수의 비율)을 보면 광주의 경우, 대기가 3.5%, 수질이 11.64%로 나타남으로써 부적률이 다른 해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그리고 같은해인 1991년에 있어서 전북의 경우에는 부적률이 대기가 9.0%, 수질이 9.9%로, 전남의 경우에는 대기가 4.9% 수질이 5.4%로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볼 때 광주를 제외한 전남·북의 경우에 단속업소수가 많았던 해에는 오히려 부적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속을 강화하는 경우에 배출업소가 긴장을 하게되고 이것이 결국 부적률을 낮추게 되는 근본요인이 되지않나 생각한다. 〈표 II-1〉의 통계가 작성된 3년 6개월동안의 세부적인 위반사항의 누계를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가 전체위반사항중 차지하는 비율이 광주의 경우 424건으로 43.5%, 전남은 430건으로 34.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비하여 전북은 338건, 2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반사항중 무허가에 의한 경우가 339

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사항에 대한 行政措置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광주의 경우, 전체위반업소수 975개 중 개선명령이 42.36%인 413건, 경고가 22.77%인 222건 그리고 조업정지가 14.05%인 137건, 고발이 3건, 다른 행정조치와 고발을 병과한 경우가 전체 975건 중 299건으로 30.67%를 점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에는 전체 위반업소 1528개 중 경고가 36.98%인 565건 개선명령이 26.83%인 410건 그다음이 사용금지, 조업정지 순이다. 고발은 6.87%인 105건으로서 광주와 전남과는 달리 대체적으로 고발을 병과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남의 경우에는 전체 위반업소 1248개 중 개선명령이 490건 39.26%, 경고가 441건 35.34% 그리고 조업정지, 고발, 사용금지의 순으로 되어있다. <표 II-2>는 광주지방 환경청관할 전남·북 대기·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표에 의하면 광주청관할이 전주출장소 관할보다 부적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보면 어느곳을 막론하고 개선명령이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경한조치로서 좀더 무거운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II-3>은 허가기관별 대기배출시설단속 및 행정조치현황표이다. 부적률을 보면 전남·북의 경우에 전국평균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데 반해 광주의 경우에는 전국평균인 12.4%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행정조치사항을 보면 전남·북 전지역에서 행정조치중 가장 경하다고 볼 수 있는 개선명령이 가장 많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가벼운 조치는 그렇지않아도 환경오

<표 II-3> 허가기관별 대기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허가기관	단속사항			행정조치						
	단속업소	부적업소	부적률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이전명령	기타
계(전국)	46,566	5,780	12.4	5,780	1,122	973	136	555	6	2,988
광주지방환경청	1,507	88	5.8	88	34	22				32
광주시	808	123	15.2	123	56	2	14			51
전북도	1,629	97	6.0	97	29	6	1			61
전남도	2,420	166	6.9	166	23	14	9	5		115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566면)

염물질의 배출시, 정화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한 경우에도 정상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배출업소들의 일반적인 행태를 감안해본다면 너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 조업정지나 허가취소 또는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II-4〉는 단속 기관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4〉 단속 기관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기관별	단속대수			부적대수			부적률 (%)	처분내용	
	계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계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정비명령	고발
전국총계	243,721	162,518	81,203	19,636	13,272	6,364	8.05	14,716	4,920
광주지방 환경청	25,660	14,504	11,156	1,216	733	483	4.73	875	241
광주시	3,765	2,043	1,722	415	190	225	11.02	322	93
전북도	4,528	2,970	1,558	443	276	167	9.78	324	119
전남도	3,504	1,633	1,871	450	234	216	12.84	330	120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569면)

이 표에 의하면 전남·북지방의 부적률은 모두 전국의 부적률 8.05%를 상회하고 있어 자동차 정비불량으로 인한 가스배출이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매연보다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이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II-5〉는 폐수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II-5〉 폐수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시도별	단속사항			행정조치						
	단속업소	부적업소	부적률 (%)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이전명령	기타
전국총계	61,639	11,015	17.9	11,015	4,303	1,917	91	849 (12.36)	14	3,841
서울	5,183	729	14.1	729	454	93		65		117
광주	1,496	281	18.8	281	106	37	1	20		117
전북	3,908	418	10.7	418	138	63	11	46		160
전남	3,834	463	12.1	463	234	39	6	16		168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588면)

위 표를 보면 전북·전남의 경우에는 부적률이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부적률이 전국평균 17.9%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폐수배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지도·단속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적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면에서도 전북·전남과 광주는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북·전남이 광주에 비해 개선명령과 같은 가벼운 조치보다는 조업정지, 허가취소,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 II-6〉은 전남·북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6〉 전남·북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

지역 별	년 도 별	단속 인원	단속 업소수	속위 업소수	반부적률 (%)	위 반 사 항						행 정 조 치						
						부적정 처리	부적정 리보	정 관	정 명	관 대	장 기	고 발	허 가 취 소	시 정 지 시	조 치 명 령	과 태 료	영 업 정 지	고 발 과
광 주	1989	90	132	3	2.27	3									3			
	1990	171	234															
	1991	618	523	2	0.38		2								2			(2)
전 남	1989	437	560															
	1990	640	483	7	1.45	7								7				
	1991	670	609	29	4.76	2	3				14			23	2	4		
전 북	1989	233	243	5	2.06	5		2						5				
	1990	458	562	14	2.49	14								14				(1)
	1991	2,703	3,817	23	0.60	2	14			7		1		22				(1)
남 부	1991	3,396	2,332	2	0.06	10	3				14	10		11	8			(3)
	1992.6	〈광주지방 환경청으로 이관〉																

(광주직할시·전라북도·전라남도가 1992년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

이 표에 의하면 단속업소수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고, 다음으로 부적률을 보면 3개지역 모두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전북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반사항으로는 전남·북지역의 경우 부적정처리가 가장 많았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가장 가벼운 시정지시를 가장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 7〉은 1990년의 소음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 - 7〉 소음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시 도 별	단 속 사 항			행 정 조 치						
	단속업소	부적업소	부적률 (%)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고 발	이전명령	기 타
전국총계	26,438	2,611	9.9	2,611	231	544	234	559 (575)	9	1,034
서울	3,789	231	6.1	231	49	3		90	2	87
광주	549	8	1.5	8		5				3
전북	1,086	76	7.0	76	42	9	5	2		18
전남	1,059	43	4.1	43	7	9	2	8		17

(한국환경연감, 환경처, 1991, 628면)

이 표에 의하면 먼저 부적률의 경우에 전국평균이 9.9%인데 반해 전남·북 전지역이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광주·전남·전북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행정조치내용을 보면 전국 총계는 고발이 559건 2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44건으로 조업정지인데 광주의 경우는 고발이 전혀 없고 조업정지가 5건이며 전북은 개선명령이 전체의 55.2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남은 조업정지와 고발, 개선명령이 비슷하게 내려졌다.

2) 環境汚染으로 인한 被害陳情現況

〈표 II - 8〉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각 시도에 진정서를 제출한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1980년 경우, 서울·부산의 피해진정건수가 전체 1,117건 중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9년의 경우에는 서울·부산이 전체의 68.9%로 나타나 대도시일수록 피해진정건수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80년 부터 1989년까지 10년동안의 피해진정건수의 추이를 보면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어서 해가 바뀌면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따라서 피해진정건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빚나가게 하고 있다. 이것은 그간 당사자들이 피해진정의 단계까지 가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

〈표 II-8〉 시도별 피해 진정 현황

시도 년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북	전남
1980	1,117	501	61				38	29
1981	1,172	364	127	72	28		73	43
1982	898	347	88	75	40		35	16
1983	1,219	666	55	95	54		55	23
1984	1,202	628	57	84	67		18	27
1985	1,106	618	61	110	31		24	23
1986	1,160	638	87	117	36		12	24
1987	1,442	631	222	132	71		60	42
1988	1,219	493	148	87	67	22	59	25
1989	1,201	649	179	55		23	27	50

(환경백서, 환경처, 1990, 292면)

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간 각 환경관련행정기관이 가져온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도·단속이 간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광주, 전북, 전남의 피해진정건수는 1980년도에 3개지역을 망라하여 전체의 6%로 나타났고 1987년도에는 7.9%, 1989년에는 8.3%로 나타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9〉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被害陳情을 原因別로 분류해 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1980년의 경우, 전체 1,117건 중 소음·진동에 관한 피해진정건수가 367건으로 32.9%, 대기오염이 266건으로 23.8%, 수질오염이 211건으로 18.9%로 나타났으며 1989년의 경우에도 전체 1,201건 중 소음·진동이 가장 많은 590건 49.1% 다음이 대기오염으로 179건, 14.9%, 그 다음이 수질오염인 163건 13.6%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소음·진동에 관한 피해진정건수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의 경우 보다 많은 것은, 예컨대 자동차

〈표 II-9〉 원인별 피해진정 현황

구분 년도	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소음·진동	악취	기타
1980	1,117	226	211	15	367	123	135
1981	1,172	303	156	24	476	147	66
1982	898	220	132	7	371	115	53
1983	1,219	229	110	6	649	166	59
1984	1,202	253	155	14	589	143	48
1985	1,106	185	136	5	577	139	64
1986	1,160	209	138	12	630	141	30
1987	1,442	205	248	17	602	203	80
1988	1,219	263	169	15	546	159	67
1989	1,201	179	163	7	590	148	114

(환경백서, 환경처, 1990, 292면)

소음이나 도시주변 주거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공장의 기계소음 등은 대기 오염이나 수질오염보다도 훨씬 더 인근주민들을 자극시키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직접적인 피해의식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3) 警察·檢察의 環境犯罪搜查 및 處理內容

〈표 II-10〉은 光州地檢과 全州地檢 管轄 環境保全法違反 處理內容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처리인원의 경우, 1989년과 1990년에는 별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광주지검·전주지검 모두 1991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1991년 통계속에 환경보전법 위반사건만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까지 포함시켜 위반사건을 집계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起訴率을 보면 높게는 99.0%에서 낮게는 1990년 전주

이 표에 의하면, 연도별 처리인원의 경우, 일정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起訴率의 경우, 1990년 전주지검에서 38.5%로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체기소인원 중 求略式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양지역 모두 낮게는 1989년 광주지검의 71.2%에서 높게는 1991년 전주지검의 100%에 이르기까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12〉은 光州地檢·全州地檢 管轄 海洋汚染防止法 違反事件 處理 內容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12〉 海洋汚染防止法違反 檢察 處理內容(광주지검·전주지검 관할)

(단위:명)

연도	관할	총계	기 소			기소율 (%)	구약식 기소 (%)	불 기 소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무혐의	기유 소액	기중 소지	공소권 없음
1989	광주지검	52	44	2	42	84.6	95.5	8	6	1		1
	전주지검	10	6		6	60.0	100	4	4			
1990	광주지검	24	22	1	21	91.7	95.5	2	2			
	전주지검	4	2		2	50.0	100	2		2		
1991	광주지검	79	72		72	91.1	100	7	6	1		
	전주지검	18	13		13	72.2	100	5	4		1	

(1989년~1991년 광주지검·전주지검 통계연보에서 발췌)

이 표에 의하면 起訴率의 경우, 낮게는 1990년 전주지검의 50%에서 높게는 같은 해 광주지검의 91.7%에 이르기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起訴人員 중 求略式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95.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II-13〉는 光州地檢·全州地檢 管轄 廢棄物管理法 違反事件 處理 內容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검찰처리인원의 경우, 1989년에서 1991년까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起訴率의 경우에는 광주지검이 전주지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체 기소인원 중 구약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양자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기소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989

〈표 II - 10〉 환경보전법 위반 검찰처리내용(광주지검·전주지검관할)

(단위: 명)

연도	관 할	총계	기 소			기소율 (%)	구 약 식 기소 (%)	불 기 소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무혐의	기 소 유 예	기 소 지	공소권 없
1989	광주지검	592	552	10	542	93.2	98.1	40	33	1	2	4
	전주지검	198	178	24	154	89.9	86.5	20	12	4	1	3
1990	광주지검	303	282	3	279	93.1	99.0	21	7	3		11
	전주지검	146	128	3	125	87.7	97.7	18	14	1	1	2
1991	광주지검	2,294	2,154	25	2,129	93.9	98.9	140	61	54	19	6
	전주지검	1,174	1,101	30	1,071	93.8	97.3	73	39	20	11	3

(1989년~1991년 광주지검·전주지검 통계연보에서 발췌; 1991년도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위반을 망라한 것임)

지검의 87.7%까지 모두 90% 내외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기소인원 중 求略式이 차지하는 비율도 1989년 전주지검의 86.5%를 제외하고는 모두 97%이상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어서 起訴率이 높은 반면 대부분 求公判이 아닌 求略式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 - 11〉은 光州地檢·全州地檢 管轄 河川法 違反事件 處理內容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 - 11〉 하천법 위반 검찰처리내용(광주지검·전주지검관할)

(단위: 명)

연도	관 할	총계	기 소			기소율 (%)	구 약 식 기소 (%)	불 기 소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무혐의	기 소 유 예	기 소 지	공소권 없
1989	광주지검	90	66	19	47	73.3	71.2	24	15	3	6	
	전주지검	41	26	2	24	63.4	92.3	15	6	8		1
1990	광주지검	34	31	6	25	91.2	80.6	3	1	1		1
	전주지검	13	5	1	4	38.5	80	8	7		1	
1991	광주지검	46	35	3	32	76.1	91.4	11	8		2	1
	전주지검	18	13		13	72.2	100	5	4		1	

(1989년~1991년 광주지검·전주지검 통계연보에서 발췌)

〈표 II - 13〉 폐기물관리법위반 검찰처리내용(광주지검·전주지검합합)

(단위: 명)

연도	관할	총계	기 소			기소율 (%)	구약식 기소 (%)	불 기 소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무혐의	기유 소예	기증 소지	공소권 없음
1989	광주지검	59	56		56	94.9	100	3	3			
	전주지검	12	9	1	8	75.0	88.9	3	1			2
1990	광주지검	33	29	1	28	87.9	96.7	4	3			1
	전주지검	25	21		21	84.0	100	4	3		1	
1991	광주지검	56	51	3	48	91.1	94.1	5	3			2
	전주지검	30	20	1	19	66.7	95.0	10	7	2	1	

(1989년~1991년 광주지검·전주지검 통계연보에서 발췌)

년부터 1991년까지 3개년간 전남북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인원 29명 중 20명이 無嫌疑處分을 받고 있어 그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다. 그 외에는 公訴權 없음, 起訴猶予 그리고 起訴中止의 順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II - 14〉는 1991년도 大檢察廳 집계 環境犯罪 接受現況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 - 14〉 1991년 환경범죄 접수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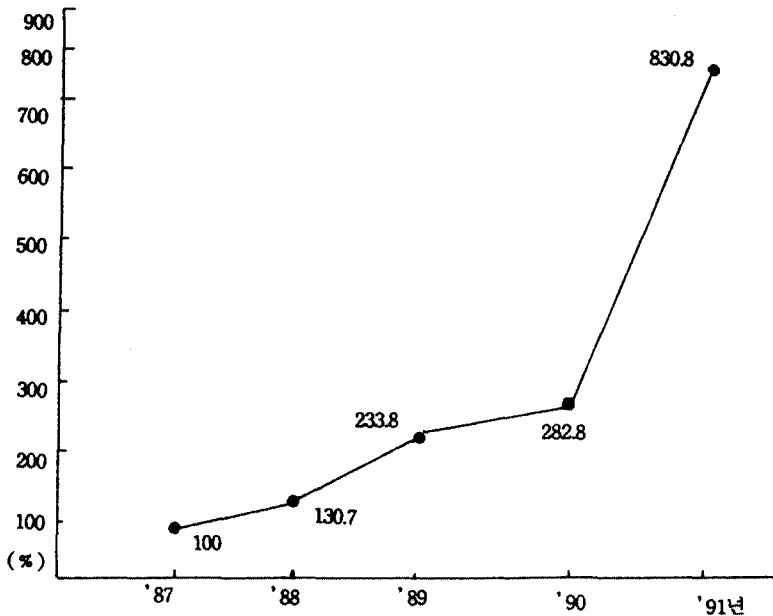
총 계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기 타
32,085	2,909 (9.9%)	19,996 (68.1%)	4,391 (15.0%)	2,049 (7.0%)	1,502 (4.7%)	1,238 (3.8%)

(1991년도 대검찰청 종합심사 분석보고 17면)

이 표에 의하면 1991년도에 접수된 환경범죄인 총수 32,085명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경우가 19,996명 68.1%로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수질환경보전법(15.0%)이다. 여기에서 환경보전법위반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이 법이 바로 1991년 2월2일에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표 II - 8〉을 보면 각종 환경오염 원인별 피해진정건수 중 소음·진동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표 II - 13〉의 경우에는 검찰에 접수된 인원이

대기환경과 수질보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소음·진동의 경우는 피해진정의 사후단계에서 거의 사건이 해결되고 검찰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림 II-15>는 최근 5년간의 環境犯罪動向을 사람수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1991년도 대검찰청 종합심사분석보고 17면)

<그림 II-15> 최근 5년간의 환경범죄동향

이 그림에 의하면 環境犯罪가 기준연도에 비해 1989년 말에는 2배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거의 100%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 한해동안에는 1987년기준 830.8%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1991년 전까지 적었던 環境犯罪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적발되지

않았던 環境犯罪가 대량으로 적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 그렇게 된 데에는 정부, 국회가 1990년에 들어와 環境問題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環境保全法을 環境政策基本法, 環境汚染被害紛爭調整法, 大氣環境保全法, 騒音振動規制法, 水質環境保全法, 有害化學物質管理法으로 細分化했다든가 環境廳을 環境處로 승격시켜 환경행정기관의 위상을 높인 일련의 조치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표 II-16>는 1991년도에 검찰에서 처리한 환경범죄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16> 1991년도 환경범죄에 대한 검찰처리현황

(단위 : 명)

계	구 공 판	구 약 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 혐 의	기 타
32,143 (100%)	520 (1.6%)	28,423 (88.4%)	640 (2.0%)	478 (1.5%)	1,279 (4.0%)	803 (2.5%)

(1991년도 대검찰청 종합심사보고 17면)

이 표에 의하면 검찰처리내용 중 구약식이 전체의 88.4%를 차지하고 있어 <표 II-10>에서 <표 II-13>까지의 광주지검과 전주지검의 통계에서 나타난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약식의 비율이 너무 높아 環境汚染防止施設經費와 시설운영비를 지출하는 것 보다 벌금 몇푼 내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몰지각한 환경법규위반자를 효과적으로 규제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求公判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 중과 동시에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표 II-17>은 日本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公害犯罪에 대한 罪名別 檢察庁 新規處理人員과 終局處理人員을 나타낸 것이다.

日本の 경우, 신규처리인원의 증감을 보면 완만하기는 하지만 감소추세에 있으며 罪名別로는 1991年の 경우 廢棄物處理法違反이 전체의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海洋汚染防止法違反이 30.0%로 뒤를 잇고 있다. 이

〈표 II-17〉 公害犯罪에 대한 檢察庁 處理現況

(단위 : 명)

罪 名	新 規 處 理 人 員			終 局 處 理 人 員	
	'89	'90	'91	'91	起 訴
總 計	3,775	3,574	3,416	3,425	1,983
廢 棄 物 處 理 法	1,235	2,159	2,042	2,048	1,293
大 氣 污 染 防 止 法	5	-	1	-	-
海 洋 污 染 防 止 法	1,331	1,220	1,126	1,161	549
水 質 污 濁 防 止 法	100	90	122	121	98

(日本犯罪白書, 1992, 50面)

것은 大氣汚染, 水質汚染, 騒音·振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는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깨끗한 물, 공기 등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주로 왕성한 산업활동으로 인한 폐기물처리라든가 해양오염방지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도 좋을 정도로 대기오염방지법과 수질오탁방지법 위반행위가 아주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終局處理人員을 보면 起訴率이 罪名에 따라 50%에 육박하는 경우에서 부터 81%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의 〈표 II-9〉에서 〈표 II-12〉까지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 檢察의 起訴率보다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IV. 環境犯罪에 대한 對策

第3章에서 全南·北地域에서의 環境犯罪現況을 각종 통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여기에서 밝혀진 環境犯罪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環境行政次元에서의 해결방안, 環境刑法을 통한 해결방안 그리고 끝으로 民間次元에서의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環境行政次元에서의 解決方案

앞의 <그림 I-5> <표 I-6>에서 <표 I-16>을 통하여 전남·북지역의 水質狀態, 大氣狀態 등이 결코 양호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¹⁴⁾ 水質의 경우에 만경강은 특수정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죽은 물이 흐르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보다 약간 덜하긴 하지만 금강과 영산강도 병들기는 마찬가지다. 영산강은 <그림 I-4>에 의하면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래 현재까지도 전국 4대강중 가장 오염이 심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강물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不問可知的 일이다. 이와는 달리 동진강의 경우에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한 후 겨우 공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며 섬진강은 전남·북지역의 다른 강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석탄류를 난방연료 및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대륙의 황사피해까지 입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양호한 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가능한 대책을 세워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수 있겠다.

첫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까지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생활하수를 100% 처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날로 악화되고 있는 금강의 수질을 고려하여 용담댐을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부족한 상수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 지역에 산업체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긴 안목을 가지고 근원적으로 환경오염가능성이 높은 공장은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공장들의 경우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확충하여 가동케 해야 한다. 셋째 광주지방환경청의 경우에는 전북을 포함하여 1개 직할시, 3개도, 다른 또 하나의 도의 일부를

14) 조상진, 전북 역시 환경안전지대는 아니다. 전북인, 1991년 5월호, 19면.

관장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환경행정을 위해서는 전북지방에도 환경출장소가 아닌 지방청을 별도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환경행정과 관련하여 국민세금으로 작성된 각종환경 관련 자료와 통계를 일반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관료주의, 폐쇄주의, 비밀주의로는 환경행정에 대해 실추된 공신력 제고와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2. 環境刑法을 통한 解決方案

1) 環境刑法의 整備

環境刑法의 整備는 지역차원만의 고려사항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환경범죄를 규율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해결방안이다. 환경형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環境刑法을 제정하는 것이 최근 세계각국의 일반적 추세이다.¹⁵⁾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環境汚染에 대한 法的인 對應에 있어서 行政規制 중심의 行政法的 차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刑事制裁는 단지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한 義務履行의 강제수단 정도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만을 가지고서는 環境問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갈 수 없다는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環境問題에 있어서 刑法이 담당해야 할 일정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검토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法務部가 刑事法改正 特別審議委員會의 논의를 거쳐 1992년 6월 國會에 상정한 刑法改正 法律案속에 環境刑法의 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刑法이 環境行政法과 공동으로 환경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改正案 중의 環境

15) Heine, Zur Rolle des strafrechtlichen Umweltschutzes, ZStW 101(1989), S. 726; DiMento, Joseph F.,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Law, New Trends in the Control of Environmental Crime(刑事政策研究院 제2회 국제워크샵 자료 1992) 8面.

犯罪에 관한 조항이 과연 날로 위기의식을 더해주고 있는 環境犯罪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몇가지 점에서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첫째가 立法技術上的의 문제이며 둘째는 保護法益 설정의 부적정성 그리고 끝으로 구체적인 구성요건 내용이 문제되고 있다.

가) 立法技術上的의 문제

이번의 改正案처럼 刑法典 속에 環境犯罪規定을 편입시키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方式으로서 犯罪成立要素를 구체적으로 모조리 構成要件에 기술하는 방식인데 반해 다른 하나는 犯罪成立要素를 관련 行政法規에 위임하고 法的 效果인 處罰部分만 기술하는 이른바 白地刑法 형태의 방식이다. 前者는 刑法이 요구하는 明確性의 원칙에는 충실히 부응할 수 있는 반면에 環境犯罪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환경여건의 속성과 기술성, 과학성으로 상징되는 환경문제의 특수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後者의 경우에도 前者와 정반대의 장·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環境問題의 기술적인 특성을 감안하는 한편 어느 정도의 명확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양자의 절충적인 立法方式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¹⁶⁾ 그런데 改正刑法案 중 환경범 죄부분은 위의 방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론 日本 改正刑法草案 第208條(毒物 등의 放流)에서 第211條(過失에 의한 飲食物混入; 毒物 등의 放流)를 그대로 모방한 것 같은 4개의 조문만을 삽입시키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나) 保護法益의 문제

改正刑法案은 第27章의 표제를 環境에 관한 罪라고 붙이고 있는 반면 각조문에서는 環境自体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지 않아 양자간에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環境刑法에 있어서 保護法益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構成要件의 내용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16) 申東雲, 前掲論文, 72面.

중요하다.¹⁷⁾ 環境犯罪의 保護法益이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3가지의 입장이 있다. 첫째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종래의 전통적인 犯罪論의 입장이다.¹⁸⁾ 둘째는 環境을 이루고 있는 因子 그 자체를 保護法益으로 보는 說이다.¹⁹⁾ 이 說은 환경매체 또는 환경인자에 대한 보호가 실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기존의 전통적인 法益에 環境刑法을 指向시키는 것보다는 環境自体에 指向시키는 것이 刑法的인 環境保護의 实效性을 提高시킬 수 있다는 刑事政策的인 고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셋째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뿐만 아니라 환경 그 자체도 保護法益에 포함시키는 견해이다.²⁰⁾ 이 說의 논리적인 근거를 보면 전체 환경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환경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人間의 生存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獨自인 環境法益의 경우에는 적어도 간접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이중적 法益保護²¹⁾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생각컨대 환경은 결국 인간과 최종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²²⁾ 최근 들어 環境汚染으로 인한 인류의 생존위기가 점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環境犯罪의 保護法益은 環境 그 자체나 人間의 生命·健康 중에서 양자택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양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²³⁾ 그런데 改正刑法案은 사람의 생명·

17) 종래에 없던 刑法條文을 새로이 立法할 경우에, 不法構成要件의 내용구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채 保護法益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刑法的 環境法益이 인정되면…… 따라서 환경법익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라는 주장(趙炳宣, 刑法改正과 環境犯罪, 1991年 刑事法學會세미나 發表 資料, 4面)은 의미가 없다.

18) Armin Kaufmann, Tatbestandsmäßigkeit und Verursachung in Contergan-Verfahren, JZ, 1971. S. 576 ; Baumann, Der strafrechtliche Schutz der Menschlichen Lebensgrundlagen, ZfW, 1973. S. 68.

19) Krey, BT 1. Rn. 813.

20) O. Triffterer, a.a.O., S. 335.

21) A.a.O.

22) A.a.O.

23) 徐巨錫, 前掲論文, 48面.

신체의 건강만을 보호법적으로 하고 있어서 환경오염과 침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의 생명·신체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 構成要件 內容上的 문제점

第284條(環境汚染)은 日本改正刑法草案 第208條(毒物 등의 放流)와 같은 조문으로서 法定刑만 다르다. 여기에서「毒物 기타 健康을 害할 물질」이라는 용어의 不明確性이 문제된다.²⁴⁾ 우선 毒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되고 또 기타 건강을 해할 물질이란 무엇인가 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하다. 더구나「…大氣, 土壤 또는 河川 기타 公共水域을 汚染시켜 公衆의 生命 또는 身體에 대하여 危險을 發生시킨 者는 …處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려면 汚染行爲와 危險發生사이에 因果關係가 존재한다는 立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因果關係의 立證이 용이하지 않다는 데에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끝으로 第284條는 環境汚染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1990년 8월 1일 제정된 環境政策基本法의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하면 大氣汚染, 土壤汚染, 水質汚染 뿐만 아니라 騒音, 振動, 惡臭까지도 環境汚染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改正刑法案은 소음, 진동, 악취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²⁵⁾

2) 環境刑法의 效率的인 適用과 執行

刑法典에 環境刑法條文을 둔다든가 環境關聯行政法에 處罰條文을 두는 것만으로는 環境汚染과 그로 인한 사람의 生命과 身體의 侵害를 방지할 수 없으며 環境刑法條文의 效率的인 適用과 執行이 전제될 때 비로소 環境刑法은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된다. 環境刑法의 效率的인 適用과 執行이 前提되지 않고는 環境刑法의 제정만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24) 이와같은 견해로는 朴相基, 刑法改正案에 대한 檢討意見, 1992. 6. 刑事法學會세미나 發表資料, 3面 以下; 趙炳宣, 前掲資料, 16面.

25) 朴相基, 上掲資料, 4面 以下.

예가 독일이다. 독일은 1980년 環境刑法을 刑法典에 포함시킬 당시 環境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처방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環境문제 해결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성과 함께 環境刑法의 근본적인 개정이 논의 되고 있는 형편이다.²⁶⁾

환경형법의 효율적인 적용과 집행을 위해서 몇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든다면 우선 環境행정단속에 있어서 相關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環境범죄는 다른 犯罪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과학성과 相關단속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環境기관이 전면에서 단속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용이하다. 그러나 현실은 汚染물질배출자와 環境행정기관이 상호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 관계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環境행정 관청과 기업의 유착관계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²⁷⁾ <표 II-2>와 <표 II-4>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행정기관이 行政단속의 결과로서 내리는 行政조치중 가장 가벼운 개선명령을 선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

26) 이에 관하여는 R. Geulen, Grundlegende Neuregelung des Umweltstrafrechts, ZRP, Heft 9, 1988, S. 323ff와 D. Dölling, Empfehlen sich Änderungen des Umweltstrafrechts?, ZRP, Heft 9, 1988, S. 334ff 참조.

27) 다음의 표는 1989년과 1990년의 Schleswig-Holstein주의 경우에 環境범죄의 고발주체의 대부분은 環境관청이 아니라 개인과 경찰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범죄의 고발자> (Schleswig-Holstein)

		1989	1990
개	인	32.3 %	30.7 %
익	명	5.5 %	4.8 %
경	찰	44.4 %	49.4 %
국경수비대, 관세청등		13.2 %	12.9 %
환경전문 행정관청		4.3 %	1.5 %

(Erich Samson, Grundprinzipien und Probleme des deutschen Umweltstrafrechts, 刑事政策研究院 제2회 국제워크샵 자료 1992, 99面).

청된다. 물론 중진국의 대열에 끼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일변도의 환경행정을 집행하게 되면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이유로 단속의 고삐를 다소 늦추는 경향도 있겠으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우선주의를 탈피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 1970년을 전후하여 종래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조화주의와 결별하고 환경보전우선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 있다.²⁸⁾

다음으로 刑事訴追機關의 專門性 確保가 시급히 요청된다. 警察, 檢察, 法院에 환경관련 전담부서설치와 인력배치가 되어있기는 하나 형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의 경우 처음 보직배치를 받은 경우에 환경에 관한한 문의한인 관계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 지식습득에 임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마저도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만 하면 잘해야 1년 내지 2년 정도만에 다른 곳이나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전문성 축적과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경찰, 검찰내에 환경관련전문 수사요원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환경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²⁹⁾ 또한 <표 II-9>에서 <표 II-15>까지에 나타난 환경관련법위반 검찰처리 내용을 보면 起訴率은 비교적 높다고 할수 있으나 기소인원 중 구약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검찰에서의 처리가 사실상 준법을 위한 威嚇力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구약식보다 구공판쪽으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본다.

3. 民間次元에서의 解決方案

環境犯罪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法律과 制度의 뒷받침 그리고 相關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전국민이 스스로 환경권에 대한 자각을 새롭게

28) 具然昌, 人權으로서의 環境權, 思想과 政策, 1989년 가을호, 88面.

29) 申東雲, 前揭論文, 83面.

하면서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일반의 인식이 환경오염행위를 일반범죄와 동일시하게 될때 비로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국민이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민간단체 즉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를 조직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가능한한 민간단체의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과 배려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게 되면 종래와 같은 관변단체의 再版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실패할 확률도 높다. 우리나라에는 그간 자생적인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초창기의 환경오염과 공해문제에 대해 권위주의 정부와 기업의 은폐주의, 비밀주의에 맞서 환경오염의 실상홍보라든가 피해자의 권리구제, 일반인에 대한 환경의식고취 등에 일정정도의 기여를 해 왔다.³⁰⁾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정치색이 짙은 구호위주의 환경운동에 매몰된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의 환경운동 단체든 새로 조직될 단체든 지나치게 투쟁위주로 나간다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NIMBY(Not In My Backyard)나 PIMF(Please In My Frontier)와 같은 현상을 대안없이 조장하는 역할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과학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배양하면서 환경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정부에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³¹⁾

30) 예컨대 공해추방운동연합이라든가 한국반핵반공해평화연구소 그리고 각 지역의 환경단체가 중심이 되어 온산공단주변의 괴질문제, 여천·울산지역의 공해피해의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밖의 대표적인 민간환경 단체로는 부산 공해추방 시민운동협의회, 대구 공해추방 운동협의회, 광주 환경운동 시민연합, 마산·창원 공해추방 시민운동협의회, 진주 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목포 녹색연구회 등이 있다.

31) 1993년 8월에 들어와서는 국내 11개 환경운동단체가 환경운동단체들의 협의체인 가칭 한국환경회의의 구성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바 이를 계기로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조선일보 1993. 8. 4. 19면).

V. 結 論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전남·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업화가 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오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졌다고 보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공업화가 다른지역에 비해 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환경오염과 環境犯罪의 實態가 별반 양호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히려 공업화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분별없이 공장을 유치하다보면 군산의 TDI공장처럼 도심가까이에 유독성가스공장을 세우는 愚를 범하기 쉽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공업화를 서두르기만 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계획성있게 선별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이른바 공해산업이라고 불리는 피혁, 염색, 도금, 펄프, 석유화학, 기계, 금속공업과 관련된 공장의 유치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環境犯罪에 대한 対策으로는 먼저 法的·制度的 측면에서의 끊임없는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1992년에 국회에 제출된 改正刑法案 중 環境犯罪에 대한 부분은 实效性提高를 위해 몇가지 점에서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法과 制度的 운영자들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부족만을 면책의 근거로 내세우지 않아야 함은 물론 지나친 온정주의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의 環境에 대한 體感汚染度를 떨어뜨림으로써 쾌적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環境團體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의 環境運動이 더욱 活性化될때 環境의 先進化가 빨리 이루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各種 環境團體의 활발한 活動을 기대해본다.

끝으로 최근 중국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로인한 西海의 오염 및 공해황사로인한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정부는 環境主權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쌍무적이든 또는 지역간의 공조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1993년 2월 서울에서 열린바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의 東北亞 環境協力 會議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中國에 환경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